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21
결재일자	2015.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뉴타운사업담당	주거정비과장	도시환경국장		
권익생	강우균	정택근	01/22 김장수		
협 조					

주민발의 총회소집 승인 관련 검토보고 (장위8구역)

2015. 1.

도시환경국
주거정비과

주민발의 총회소집 승인 관련 검토보고

장위8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우리구에서 2014. 7. 31일 승인한 주민발의 임시총회 개최에 대하여 아직까지 총회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인기간(2개월)을 조건부여하여 주민발의 총회 소집승인 목적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보고 드림.

I

사업 개요

- 사업명 : 장위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재정비촉진지구)
- 위치 : 장위동 85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19,371㎡(조합원 1,187명)
- 건축계획 : 지하2층/지상29층 23개동 1,691세대(임대289포함)
- 조합장/시공사 : 김상중/ 삼성,GS,현산

II

추진현황

- 2008. 7. 11 : 추진위원회 승인
- 2010. 8. 11 : 조합설립인가
- 2014. 1. 21 : 주민발의 총회승인 요청(대표자 최구영→우리구)
- 2014. 2 ~ 7 : 총회개최 관련 조합 및 비대위간 갈등해소를 위한 면담 실시 및 설명회 개최
- 2014. 7. 31 : 주민발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승인

Ⅲ

문제점

- 조합과 비대위간 극심한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되므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항 및 장위8구역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발의서가 조합의 1/5이상(조합원수1,187명중 발의자 256명(공유자 및 주민번호오류 미포함11명)) 요구하여 주민발의 총회소집 요청을 승인하였으나
- 우리구에서 승인한 2014. 7월 이후 조합정상화를 위한 주민발의 임시 총회소집이 지연됨에 따라 승인 목적이 축소되고 기간경과 등 무효를 주장하는 비대위측의 반발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Ⅳ

처리의견

- 승인된 주민발의 임시총회소집을 조속히 추진하여 현재 임기가 만료된(2012.8.10) 집행부의 선임 및 조합원들의 갈등 해소와 정상적인 조합운영을 위하고
- 자발적인 주민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추진 및 조합정상화 여부를 판단하도록 발의자대표 및 조합에 주민발의 총회소집 승인기간(2개월)을 조건부여 하여 조속히 주민발의 임시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고자 합니다.